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·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**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무주택기간 부적격 사례

부적격사례 01 만 3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[30년이상]을 선택한 경우
▶ 무주택기간 산정 : 5년으로 선택해야 함
→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(단,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합니다.)

부적격사례 02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, *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33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▶ 무주택자가 아님
→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.
* 세대분리 : 부부가 각각의 주민등록표에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

부적격사례 03 만 65세 이상인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한 경우
▶ 무주택자가 아님
→ 본인 또는 배우자의 '직계존속'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

부적격사례 04 청약자(무주택)와 배우자(무주택)가 세대분리 되어있고, 배우자가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중인데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
▶ 무주택자가 아님
→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(형제 · 자매는 해당없음)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
부적격사례 05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2020년도에 공급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
▶ 무주택자가 아님
→ 2018.12.11.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된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단, 해당 분양권 타입의 아파트 청약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

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

부적격사례 01 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자녀2명] 4인가족일 때 부양가족 4명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▶ 부양가족수 3명으로 청약신청 해야함
→ 청약자 본인은 '부양가족'에서 제외 됨

부적격사례 02 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만60세 이상, 주택소유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2명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▶ 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신청 해야함
→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

부적격사례 03 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무주택, 세대주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2명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▶ 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신청 해야함
→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함

부적격사례 04 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(며느리)] 4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을 3명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▶ 부양가족 1명으로 청약신청 해야함
→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혼인 자녀만 가능

부적격사례 05 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(32세, 미혼, 5개월 전 전입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을 2명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▶ 부양가족 1명으로 청약신청 해야함
→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함